

『구미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6월 19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19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6월 28일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정 인 기

나. 제안이유

-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증대와 책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소송수행자로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포상금 지급금액 개정(안 제5조)
 - 본안사건(행정·민사)의 경우
 - “1인당 100,000원 이내”를 “1건당 600,000원 이내”로 개정
 -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를 “1건당 200,000원 이내”로 개정
 - 신청사건(행정·민사)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를 “1건당 100,000원 이내”로 개정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성 수

○ 본 개정 조례안은

- 업무 중 당면한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증대와 책임감을 도모하기 위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 1조 및 2조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소송에서 유리하게 판결을 받게 한 소속 공무원인 소송 수행자 및 소송에 따르는 관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 민사 소송의 본안사건은 “1인당 100,000원 이내”에서 “1건당 600,000원 이내”로, 민사 소액사건 심판은 “1인당 20,000원 이내”에서 “1건당 200,000원 이내”로, 행정, 민사 소송의 신청사건은 “1인당 20,000원 이내”에서 “1건당 100,000원 이내”로 현실화 하여 조정하였음.

○ 검토결과

- 업무관련 소송사건의 증가로 인해 소송 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책임감 도모를 위해 수행자 포상금의 현실화 상향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